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0398

발의연월일 : 2026. 8. 4.

발 의 자 : 문진석・김우영・박상혁 김한규・박정현・김의겸 진선미・백승아・김문수 朴芝源・문대림 의원 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한국연구재단, 국립외교원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공공기관 등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강조되고 있음.

대통령령인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・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・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함. 그러나 진단・점검의 근거를 법률로 격상시키고 제재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・위협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・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 등이 발견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등을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(안 제56조제5항 및 제6항

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6조의 제목 중 “시행”을 “시행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·위협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·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5항의 자체 진단·점검에서 취약점 등이 발견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.

제78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체 진단·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아니한 자

4. 제56조제6항을 위반하여 취약점 등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) ① (생 략)	제3조(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② (생 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제56조(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·시행) ① ~ ④ (생 략)	제56조(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·시행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·위협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·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<신 설>	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5항의 자체 진단·점검에서 취약점 등이 발견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.
제7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제78조(과태료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3.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체 진단·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아니한 자
<신 설>	4. 제56조제6항을 위반하여 취약점 등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자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